

사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06 -제48호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출연월일 2006. 8. 21.
제 출 자 사 천 시 장

1. 의결주문

사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시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의 지원을 목적으로 조성 운용되고 있는 체육진흥기금의 사용용도에 체육회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가. 체육진흥기금의 사용용도에 체육회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(안 제4조)
- 나.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서 규정된 조항 삭제(안 제5조·제6조 및 제8조)

4. 주요 토의과제 : 없음

5. 참 고 사 항

- 가. 관계법령 발췌 : 따로 붙임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기획담당관
- 라. 기 타
 - 1) 신·구 조문 대비표 : 따로 붙임
 - 2) 입법예고(2006.7.19~8.10)결과 제출된 의견없음
 - 3) 규제심사 : 해당 없음

사천시 조례 제 호

사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사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사천시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조례

제4조제1항중 “각호” 를 “각호의 어느 하나”로 하고, 같은항 “제4호”를 “제5호”로 하며, 같은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체육회 운영비 지원

제5조·제6조 및 제8조를 삭제한다.

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9조(준용) ① 기금관리 및 결산 등에 관하여는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및 같은법 시행령을 준용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「사천시 재무회계 규칙」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4조 (기금의 용도) ① 기금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목적에 사용한다. 1 ~ 3 (생략) <신설> 4.(생략)</p>	<p>제4조 (----)① --- 각호의 어느 하나 ----- 1 ~ 3 (현행과 같음) 4. <u>체육회 운영비 지원</u> 5. (현행 제4호와 같음)</p>
<p>제5조 (기금의 운용관리) ①기금은 기금 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 ②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금으로 예치·관리하여야 한다. ③기금은 당해연도 이자 수입액 범위 내에서 집행하되, 잉여금 등은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할 수 있다.</p>	<p><삭제></p>
<p>제6조 (기금운용의 계획) ①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 1.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.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지출에 관한 사항 3.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.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</p>	<p><삭제></p>
<p>제8조 (기금결산) ①시장은 출납폐쇄 후 3월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. 1.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.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.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</p>	<p><삭제></p>

현행	개정안
<p>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·의결을 받아야 한다.</p> <p>제9조 (관계규정의 준용 등)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, 지출의 절차 및 출납·보관,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·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.</p> <p>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사천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.</p>	<p>제9조(준용) ① 기금관리 및 결산 등에 관하여는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및 같은법 시행령을 준용한다.</p> <p>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「사천시 재무회계 규칙」을 준용한다.</p>

관 련 법 령 발 취

【지방자치법】

제133條 (財産 및 基金의 設置) ①地方自治團體는 行政目的의 達成을 위하여 또는 公益上 필요한 경우에는 財産을 保有하거나, 特정한 資金의 運用을 위한 基金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第1項의 財産의 保有, 基金의 設置·運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條例로 정한다.

③第1項에서 "財産"이라 함은 現金외의 모든 財産的 價値가 있는 물건 및 權利를 말한다

【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】

제6조 (기금의 관리 및 운용) ①기금은 歲計現金(歲計現金)의 수입·지출·보관의 절차,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·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.

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「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한다.

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「지방재정법」에 의한 지방채발행한도액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기금의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.

④그 밖에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

제7조 (회계연도 및 출납폐쇄) ①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.

②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월이 경과한 때에 폐쇄한다.

제8조 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③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,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.

④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지방자치단체 세입·세출예산편성기준(행정자치부 훈령 제158호)

제8조(기준경비) ①기준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균형유지가 필요한 경비와 수혜계층이 넓고 이해관계가 많은 경비로 다음 각호의 경비를 말한다.

1. 지방의회 관련 경비
2. 업무추진비
3. 사회단체보조금
4. 통·리·반장 활동보상금

②지방자치단체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별표 1 내지 별표 4의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

※ **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예산편성기준** :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경비, 또는 법령·조례에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원하는 운영비